

1일 200톤 이상 폐수배출업소 24시간 원격감시

환경부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단속방법을 24시간 원격감시체제로 전환하고 배출부과금 부과 방식을 실제배출량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수질TMS를 구축하기 위하여 폐수를 1일 200m³이상 배출하는 1~3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일 2,000톤 이상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는 내년 9월까지, 1일 700톤 이상의 2종 배출업소는 2008년 9월까지, 1일 200톤 이상의 3종 배출업소는 2009년 9월까지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1~3종 신규 배출업소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완료 전인 가동개시 신고 전에 부착하여야 한다.

폐수·하수종말처리장도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토록 하여 내년부터 원격감시하고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하지 않는 종말처리구역내 1~3종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제외하였다.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에서 측정된 자료는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 확인 및 배출부과금 부과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한 배출업소는 현장 지도점검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인천소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수질TMS 관제센터를 금년 8월말까지 설치하여 9월부터 폐수종말처리장과 처리능력 10,000톤/일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청정지역에 적용되는 구리·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조정하고, 원료 중 공업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입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수배출시설 규제를 합리화하였

다. 그간 청정지역은 구리·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이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강하게 적용되어 왔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 내에서는 공업용수(지하수, 하천수 포함)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인하여 폐수에서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라도 그 입지가 제한되어 왔다. ◀

○ 수질자동측정기 부착대상 종류 및 사업장

측정기의 종류	부착대상 사업장
측정항목 : pH, BOD, COD, SS, TN, TP 부대시설 :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D/L)	- 1~3종 폐수배출사업장 - 처리능력 200m ³ /일 이상 공동방지시설 - 하·폐수종말처리장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 '06년 시범사업 대상사업장(183개소) : 10,000m ³ /일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산단폐수종말처리장
적산전력계	- 공동방지시설 - 1~5종 폐수배출사업장
적산유량계	용수량측정기 위와 같음.
	폐수량측정기 - 공동방지시설 - 1~4종 폐수배출사업장 - 5종 사업장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30m ³ /일 이상인 사업장

※ 부착면제 사업장 : 폐수의 순환·재이용 등으로 1일 200m³ 미만 배출사업장, 폐·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공동방지시설로 전량유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배출시설의 폐쇄·이전계획이 확정된 사업장, 연간 30일 미만 조업하는 사업장, 회분식(배치식)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원폐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항목 측정기는 부착 면제, BOD와 COD중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의 측정기기 1개만 부착